

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- 64 호

『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77조 및 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
남 원 시 의 회 의 장

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

1. 개정이유

인구감소는 모두에게 위기다. 다방면의 정책과 광범위한 지원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 숙제이다. 이 맥락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인구감소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 :: 2023. 8. 28. ~ 2023. 9. 4 (7일간)
- 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9월 4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
자치행정위원회

라. 문의 및 접수: 자치행정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6)

마.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붙임 조례안 1부.